

(재)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공고 제 2025 - 50호

- 한방천연물산업 신성장 지원 사업 -

2025 한방천연물제품 임상시험 지원 사업 모집 재공고

한방천연물클러스터 기업 제품의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제품의 효능 입증 등 신뢰성 확보와 질적인 향상을 추진하여 매출 증대 및 제품고도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를 시행하오니 제천한방천연물클러스터 기업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 9. 17.

(재)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한방천연물산업 신성장 지원 사업(한방천연물제품 임상시험 지원)

나. 사 업 비 : 22,100천원(평가를 통해 최대 3개 기업 차등 지원) ※ 도비 : 60% / 시비 40%

다. 사업기간 : 2025. 9. ~ 2025. 12. / 약 4개월

라. 주관기관 / 부서 : (재)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 천연물산업팀

마. 사업목적

- 제품의 효능 입증 등 신뢰성 확보와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의 질적인 향상 추구

바. 지원대상 : 제천한방천연물클러스터 기업회원 (공고일 기준)

※ 화장품(미용), 의약외품 등 관련 분야 기업 한정

사. 지원내용 : 화장품(미용), 의약외품 등 관련 분야 기업에 한해 안전성 시험, 유효성 평가지원 등 각종 임상시험 지원

※ 동일한 제품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 세부내용

가. 사 업 비 : 22,100천 원(충청북도비 : 13,260천 원(60%), 제천시비 8,840천 원(40%))

나. 선정기업 : 최대 3개 기업

다. 자기부담금 : 지원금의 20% 이상(부가가치세 별도 기업 부담)

라. 사업예산 내용 (단위 : 원)

지원금 (예시)	기업부담금		총 액
	보조금의 20% 이상	부가가치세	
8,000,000	1,600,000	960,000	10,560,000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최소 20% 책정 기준임

마. 지원분야

- 기능성 화장품 평가
 - 미백기능성, 주름 기능성, 자외선 차단 등
- 화장품 유효성 평가
 - 보습, 탄력, 피지, 피부결, 피부 잡티, 피부주름, 피부밝기, 피부 진정 등
- 안전성 평가
 - 피부자극 인체적용 시험 등
- 각종 분석지원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배합금지 및 사용한도성분 분석 등
- 의약외품 임상시험
 - 치아 미백, 잇몸 염증,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시린 이 등
- 기타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임상시험 등

바. 추진일정

참여기업 모집·선정	사업 진행	사업종료 및 성과분석
참여기업 모집·선정	협약체결 및 임상시험 진행	사업 종료 및 결산, 기업별 성과분석
2025. 9. ~	2025. 9. ~ 12.	종료일 ~ 2025. 12.

* 사업 추진 사항에 따라 세부 일정 변동 가능

3. 신청절차 및 선정방법

가. 신청 기간 : 2025. 9. 17.(수) ~ 9. 23.(화), 17:00시 까지 [7일간]

나. 제출 방법 : 방문 제출(한방생명과학관 2층 천연물산업팀)

* 도장 날인 필수 / 공고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흡 시 접수 무효 처리

다.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업별 차등 지원

※ 신청 기업 수가 저조하거나 미달될 경우 제출한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라. 문 의 처 : 천연물산업팀 임동현 대리(043-920-5512)

마. 신청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제출 수량	비고
1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붙임 1>
2	임상시험 견적서	1부	.
3	청렴이행서약서	1부	<붙임 2>
4	최근 1년간 납세증명서 (지방세 1부, 국세 1부)	각 1부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6	2023년, 2024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홈택스 발급분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4. 지원 제외 대상

가. 정부 지원사업 및 관내 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기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보고서 미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

나. 법인 또는 대표자(일반, 간이 과세자)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라.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

마. 기타 기업 선정절차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자 또는 기업

5. 기타 유의 사항

- 가. 해당 사업은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의 효능을 입증하는 등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품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여 기술력 제고와 제품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기업은 사전 임상시험 대상 제품 선정, 선정된 제품으로 연구기관과 소통하는 등 사업 진행 일정, 방법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 나. 기업은 사전에 임상시험 견적서 및 관련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들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에도 포함하여야 함.
- 다. 기업은 임상시험 추진 중 변경되거나 최초 제출한 내용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재단에 알려야하며, 사전 소통 및 확인 없이 임의로 진행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
- 라. 사업 신청과 관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마. 신청 서류 및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및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함.
- 바. 동일한 제품에 한해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선정되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에 패널티를 부여함.

- 붙 임 1.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 1부.
2. 청렴이행서약서【서식 2】 1부. 끝.